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商標登錄取消

<大法院 第1部 判決>(1985. 5. 14)

事件番號: 84후 122

裁判長: 이 회 창

關與法官: 이 일 규 · 전 상 석 · 정 기 승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주) 신세계백화점(대표: 유한섭)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한 만 운 의 1
3. 原審決: 特許廳 1984. 11. 30字, 1983年 抗告審判(當) 第81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上告人의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1. 記錄에 의하면 上告人의 登錄商標 第81833號는 1980. 6. 24 出願되고 1982. 3. 25 登錄된 것으로서 둥근원형의 윤곽선안에 두마리의 공작새가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圖型임이 명백하고 이는 商標 第45類중 양말을 그 指定商品으로 하고 있으며 上告人이 그 製品인 양말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商標는 “공작표”라는 한글자를 각 글자마다 4각형안에 표시하고 그 左側下部에 위 登錄商標로 보여지는 圖型을 둥근테두리안에 두마리의 공작새가 마주 서있는 동형으로 표시되고 그 우측에는 아크릴·면나이론등의 材質들을 표시하고 이들을 큰사각형의 윤곽으로 둘러싸서 구성된 것인데 위 登錄商標의 공작새의 꼬리부분이 줄기진 깃털모양임에 비하여 實使用商標의 공작새의 꼬리부분은 서로 대향적으로 약간 안으로 휘어진 圖型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양자는 類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趣旨에서한 원심결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商標類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被上告人의 登錄商標 第28253號는 1972. 7. 26 出願되고 1972. 11. 22 登錄된 것으로 한마리의 공작새가 꼬리를 180도 방향으로 펼쳐 있는 圖型으로서 第45類내의 양말, 장갑, 타월

등을 指定商品으로 하고 있고, 登錄商標 第49273號는 1975. 8. 21 出願되고 1977. 4. 22 登錄된 것으로 상부에 공작새 머리부분 주위를 네출선으로 휘감은 圖型을 표시하고 그 중간부분에는 영문자로 “Peacock”이라고 표기하고 그 하부에는 한글자로 “공작”이라고 병기하여된 圖型과 文字의 결합상표로서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를 指定商品으로 하고 있으며 이 登錄商標 第49273號商標는 그 文字部分을 “Shinsegae’s”라고 변경 표시하여 그 製品인 양말에 사용하고 있음이 기록상 또한 명백하여 동 商標들은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 공작새를 표현하고 있음이 또한 뚜렷하다.

그렇다면 後登錄인 上告人의 위 登錄商標 第81833號와 類似한 위 實사용의 商標는 同種의 指定商品인 양말에 대하여 被上告人인 신세계백화점 製品에 사용하는 위 登錄 第28253號 및 第49273號 商標와 칭호 및 관념이 類似한 商標로서 商品出處의 혼동을 생기게할 염려가 있다고 할것인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上告는 理由없이 棄却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